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담장철거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피고는 원고에게,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11㎡ 중 별지도면 표시 "1,
 2, 3, 4, 1"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가)부분 13㎡ 지상의 담장을 철거하고 위 (가)부분 13㎡를 인도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11㎡는 원고가 19○○. ○. ○. 소외 ●●●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입니다.
- 2. 한편,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동 〇〇-〇 대 159㎡의 소유자인데, 원고는 피고와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 경계를 확

실히 하기 위하여 ○○감정원 소속의 측량감정사로 하여금 원고 대지에 함께 여 경계측량감정을 의뢰한 결과 원고의 점유부분이 지적공부와는 달리 13 부족하고 아울러 피고의 담장이 원고 소유의 대지 일부를 침범하여 무단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

3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대 211㎡ 중 피고가 점유할 권원없이 점유한 별지도면 표시 "1, 2, 3, 4, 1"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가)부분 13㎡ 지상의 담장을 철거하여 위의 (가)부분 13㎡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.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

1.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건물(담장)사진

1. 갑 제4호증 토지대장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2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도 면

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211㎡		
2	1	3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		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		
비용	・인지액: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- 1.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- 2.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,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 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1조), 담장철거청구의 가액이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, 대지인도청구의 가액

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.

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